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전진숙·문금주·송재봉

김남희 • 박민규 • 전재수

모경종 • 장경태 • 박정현

임호선 · 오기형 · 서미화

민형배 · 김문수 · 김주영

윤준병 • 정진욱 • 박 정

양부남・남인순・김 윤

박균택 • 이재강 • 이학영

박용갑 • 전종덕 • 이훈기

오세희 • 박해철 • 김남근

이용우 · 정성호 · 김 현

의원(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 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법률 제 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를 "18세"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8세</u> 미	지급액) ① <u>18세</u>
만의 아동에게 매월 <u>10만원</u> 을	<u>20</u> 만원
지급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u>1</u>
다)은 <u>8세</u> 미만 아동의 보호자	8세
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②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8세</u>	<u>1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④ (생 략)

-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생 략)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u>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
-
<u>1</u> 8세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u>18</u>

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지급할수 있다.

② ~ ⑤ (생 략)

•
•
② ~ ⑤ (현행과 같음)
(7) ~ (5) (99) 4 是言)